

# 총학생회 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상명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 탐구와 건전한 대학 문화를 창달하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부응하는 실천 과정 속에서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치)** 본회는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은 제외되며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사업 계획, 회비와 재정, 그 밖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율과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6조 (지도)** 본회는 학생 자치활동에 관련하여 학생처의 지도를 받는다.

**제 7조 (자치기구)**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학생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정·부회장과 집행부,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의 기구를 둔다.

## 제 2 장 학생총회

**제 8조 (구성)** 학생총회는 제 4조에 따른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9조 (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유고 시에는 총학생회 부회장, 단대 학생회장 1인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 10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2.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제 11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 시 개최 6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 12조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3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회원은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 제 3 장 대의원회

**제 13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단, 학생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을 시에 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 14조 (구성)**

1. 대의원회는 본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각 학(부)과·전공 학년별 대표 1 인으로 한다. (단, 대의원은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나,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집행부, 학회장 및 부학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15 조 (의장)**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의장 궐위 시에는 부의장, 재적 상임위원 1 인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 16 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안건에 관한 사항
2.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3.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8. 대의원회의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9. 상임위원회 선출권
10.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11. 제 7 조에 명시된 자치기구 정·부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12. 집행부 승인권
13.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17 조 (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을 포함하여 매 학기 1 번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 궐위 시에는 제 16 조 5 항 및 9 항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1 인이 본 조 제 2 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 소집 시 개최 4 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 18 조 (의결)**

1. 대의원회 의결은 제 16 조 제 4 호 및 제 11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 16 조 제 4 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 11 호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아래 각 항에 따른다.

1.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2. 차기 대의원 지원자가 없을 시,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3. 차기 상임위원회 궐위 시, 상임위원회 재선거일까지 본 회 회원에 한해 임기가 연장된다.

## 제 4 장 상임위원회

**제 20 조 (구성)** 대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둔다.

1. 상임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이 된다.
2. 상임위원은 각 단과대학 대의원이 호선한 대표 대의원 2인으로 한다.
3. 상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업무 및 권한)**

1.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안건에 관한 사항

- 나.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다.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
  - 라.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상정
  - 마. 예산 및 결산 심사
  - 바. 회계 및 사무 심사
  - 사.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 아. 대의원회의 제반 사업과 예·결산 보고서의 검토, 조정 및 운영위원회 제출
  -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 차. 제 7 조에 명시된 자치기구 정·부회장의 탄핵안 발의 및 상정
  - 카. 기타 회칙에 명시된 사항
2.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적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학생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가름할 수 있다.
- 제 22 조 (의결)**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장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집행부

### 제 23 조 (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학생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총학생회 집행부의 장이 된다.
2.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3. 총학생회 정·부회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제 24 조 제 1 호의 집행부 임원 임면과 제 4 호의 본 회 전체 사업 계획 수립은 제외한다.)

### 제 24 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 임원의 임면과 대의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회의 소집과 이의 주관
3. 본 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
4. 본 회 전체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결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의원총회 제출
5.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집행
6.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제 25 조 (집행부) 총학생회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로, 8개부(부장 1 인, 차장 1 인, 부원)로 조직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단, 명칭과 부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1.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
2. 총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 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
3. 집행부의 명단은 매 학기 초에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 제 6 장 운영위원회

### 제 26 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 제 27 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동아리나 학(부)과·전공 학생회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2. 예산 편성 시에 한하여 대의원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8 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의 책정 및 대의원회 상정
2.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3.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
4.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의 제반 사업과 예·결산 보고서의 검토, 조정 및 대의원회 제출
5.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
6. 회칙 개정안의 발의와 대의원회 상정
7. 대의원회의 회계 및 사무 심사
8. 제 7 조에 명시된 기구 정·부회장의 탄핵안 발의 및 상정
9.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의결

**제 29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 회의는 매월 1 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 30 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 장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및 집행부

**제 31 조 (지위)** 단대 학생회는 본 회 하부 구조로서, 당해 대학의 최고 학생 자치기구이다.

1. 단대 학생회장은 당해 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 회 운영위원 및 단대 집행부의 장이 된다.
2. 단대 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 사업의 예·결산 보고서를 본 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단대 학생회 부회장은 단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단대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회원)**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 33 조 (단대 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단대 집행부 임원의 임면과 대의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단대 집행부의 회의 소집과 이의 주관
3. 단대 회원의 증의를 대표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
4. 단대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결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의원총회 제출
5.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단대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집행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7. 기타 단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집행부)** 단대 학생회 집행부는 총학생회 집행부에 준하며, 2~4개부(부장 1 인, 차장 1 인, 부원)로 조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단, 명칭과 부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1.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
2. 단대 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 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
3. 집행부의 명단은 매 학기 초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 35 조 (업무 및 권한)** 단대 학생회는 당해 대학의 각 학(부)과·전공을 기반으로 본 회 제반 기구의 업무에 준하여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36 조 (예산)** 단대 학생회 예산 배정은 대의원장이 각 대학별 학생회비 제출 인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정한다.

**제 37 조 (단대 학생회칙)**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 회칙에 준하여 각 단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8 장 재정

### 제 38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본 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9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 일까지로 하며, 예산 집행은 2 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 제 40 조 (예산)

1. 대의원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금학기 학생회비 현황과 자치기구별 분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각 자치기구는 사업 계획에 의하여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운영위원회는 동 예산안을 검토 및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안 접수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의원은 예산안에 이의가 있을 시, 예산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각 자치기구에 이의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각 자치기구는 이의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여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 및 대의원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 대의원총회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시 예산안을 확정하여 운영위원장 및 대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대의원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학생처를 거쳐 24 시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제외한 다음날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8. 예산 확정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입이나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동 추경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총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 당국에 위임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교의 일반회계 지출 절차에 준하여 총학생회장이 인출·집행한다.

**제 41 조 (가예산)** 본 회의 예산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 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때 총학생회장은 대의원장과 협의하여 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 42 조 (결산)

1. 운영위원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각 집행부가 작성한 해당 결산 보고서를 수합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결산 접수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2. 대의원은 결산안에 이의가 있을 시, 결산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각 자치기구에 이의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각 자치기구는 이의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여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 및 대의원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대의원총회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시 결산안을 확정하여 운영위원장 및 대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의원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학생처를 거쳐 24 시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제외한 다음날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 43 조 (감사)** 본 회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의원회의 사무 및 회계는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 9 장 탄핵

**제 44 조 (탄핵)** 대의원장은 아래 각 항에 따라 제 7 조에 명시된 기구 정·부회장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탄핵 소추 시, 운영위원장이 주체가 된다.)

1. 제 46 조에 따른 탄핵안 발의 즉시, 대의원장은 학생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올린다.
2. 탄핵안 의결 시, 대의원장은 의결 결과를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3. 대상자는 탄핵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대의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대의원장은 이의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심의 결과를 통보했을 시, 대의원장은 학생처를 거쳐 탄핵 소추 결과를 확정·공고한다.

**제 45 조 (탄핵 사유)** 탄핵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한 경우
2. 학생 준칙을 포함한 우리 대학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제 46 조 (발의)** 제 45 조의 탄핵 사유 발생 시, 탄핵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계 감사 중, 감사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2. 기타 필요 시,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 제 10 장 선거

**제 47 조 (임기)** 제 7 조에 명시된 자치기구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2 학기 기말 시험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9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선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를 둔다. (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0 조 (선거 방법)**

1.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되, 전자 투표 또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전 과정에 2 인 1 조로서 참여하고, 최다 득표조를 당선조로 한다. (단, 당해 회원 30%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
3.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은 차기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4.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51 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제 11 장 회칙 개정

**제 52 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발의
3. 본 회 회원 100 인 이상의 발의
4.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발의

**제 53 조 (이의 제기)**

1. 제 52 조에 의한 회칙 개정안 발의에 이의가 있을 시, 운영위원장 및 대의원장은 회칙 개정안을 전달받은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발의 대표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발의 대표자는 이의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대의원장은 의결 시 이의 내용을 공개한다.

**제 54 조 (의결)** 본 회칙 개정 발의 시 대의원장은 이를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6 일 이내에 공고하고, 대의원총회 결과 공고 시 공표한다.

**제 55 조 (효력)** 본 회칙 개정안은 공표 후 익일 0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 12 장 학생지도 및 관리

**제 56 조 (지도 및 관리)** 제 7 조에 명시된 학생 자치기구는 학생 준칙을 포함한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에 관하여 학생처의 지도·관리를 받을 수 있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단, 위 1, 2, 3, 4 호의 경우 사전에 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 13 장 보칙

**제 57 조** 회칙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의 시행 세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58 조** 기구는 캠퍼스별로 구성한다.

### 부칙

1. 이 회칙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상명여자대학 학도호국단 운영규정은 자동 폐지된 것으로 한다.
2. 이 회칙은 198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회칙은 198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명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회칙은 199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회칙은 2001 년 9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회칙은 2006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4 년 1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8 년 9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8 년 11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9 년 4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0 년 1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2 년 6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2 년 12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3 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3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5 년 0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5 년 05 월 07 일부터 시행한다.